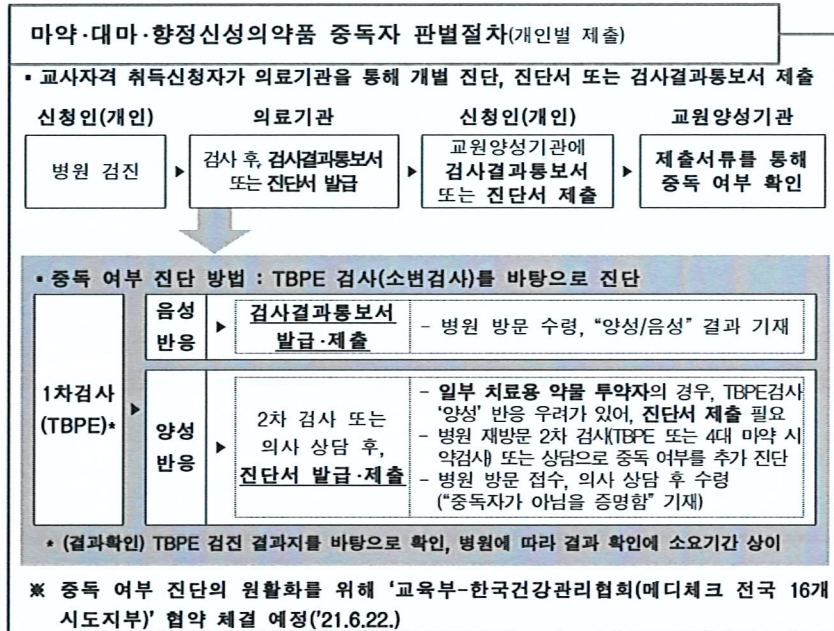
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(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)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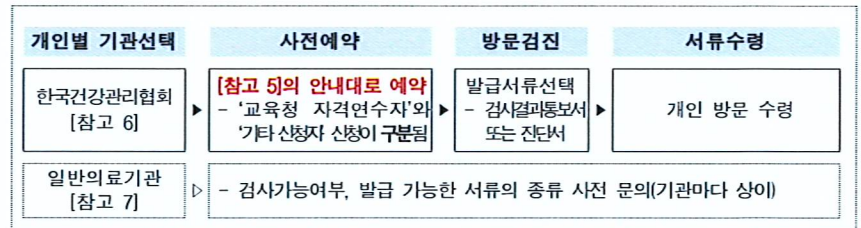
①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[참고 2, 3, 4]
※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'양성'반응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'의사의 진단서'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
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'마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※ (예시)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'23년 8월 졸업예정자'의 경우, '22년 1월~'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·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
- (검진방법) 소변검사로 실시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※ (TBPE검사)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 (4대 마약 시약검사)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(검사 신뢰도 상승)
- (검진비용)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TBPE검사의 경우 '검사결과통보서'는 약 5,000원~25,000원, '진단서' 포함 시 약 15,000~35,000원 예상
※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'4대 마약 시약검사'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
- (검진기관)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-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에서 마약검사가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 [참고 7]
* www.hikorea.go.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
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- (한국건강관리협회) '21.6.23.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('21.6.22.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)
※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[참고 5, 6]

② [참고] 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 검진안내 [참고 5]

- (검진신청)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'21.6.23.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



※ (검사결과통보서)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,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

- (검진내용 및 비용)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, 서류* 발급
* (TBPE검사+검사결과통보서)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,000원 / 비병행시 6,000원
→ (+진단서) 10,000원 추가